

투자설명서 등 변경 안내문

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□ **효력발생일:** 2014년 10월 1일(수)

□ **대상 펀드**

-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
- AB 이머징마켓 증권 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
- AB 유럽 증권 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

□ **변경대비표**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<u>없습니다.</u>	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<u>없으며</u>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<u>없습니다.</u>
		<u>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없습니다</u>	<u>원본손실위험,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u>
		<u>(신설)</u>	<u>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, 소규모펀드 해</u>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	미국 해외금융 계좌납세협력 법(FATCA)과 관련하여 투자 결정시 유의사 항 신설	(신설)	<u>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 회사 및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u> <u>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 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 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(투자 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 상 거주지국)의 권한 있는 당 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, 판매 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 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u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, 5. 운용전문인력에 관 한 사항	연간 갱신		<u>자료 업데이트</u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,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 과되는 보수 및 비용	연간 갱신		<u>자료 업데이트</u>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, 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운용	연간 갱신		<u>자료 업데이트</u>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실적			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, 1. 집합투자업자에 관 한 사항, 라. 운용자산규모	연간 갱신		자료 업데이트
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 요내용 설명 확인서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	(삭제)

기 타: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변경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